

작성방법

납세의무자란

- ② 모법인명(대표자): 당해 법인이 연결법인인 경우 모법인명과 모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.
- ③ 법인등록번호(모법인 등록번호): 신고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, ()에는 모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④ 사업자등록번호(모법인사업자등록번호): 신고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, ()에는 모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⑤ 소재지(연락처): 신고서에 기재된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하며, 연락처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⑥ 업종(업태), ⑦ 종목: 신고서상에 기재된 업종(업태), 종목을 기재합니다.
- ⑧ 세적관리: 신고기한 내 법인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소재지 및 변경일을 기재합니다.

⑨ 신고 등의 구분: 신고, 수정신고, 기한후신고, 결정,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
⑩ 귀속연도: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.

⑪ 사업기간: 해당 신고법인의 회계연도 사업기간을 기재합니다.

⑫ 세무서, 담당자: 해당기관의 코드 및 업무 담당자를 기재합니다.

⑬ 구분: "당초"는 "수정"으로 통보되는 자료의 직전 자료를 기재하며, "수정"은 수정신고, 기한후 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.

⑭ 신고·결정·경정일: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(수정·기한 후 신고 포함)·결정·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.

법인세 신고·결정·경정내역(법인세란)

- ⑮ 과세표준: "각 사업연도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 - 비과세소득 - 소득공제 + 선박표준이익"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.
- ⑯ 지점유보소득: 「법인세법」 제96조에 따른 지점유보소득을 기재합니다.
- ⑰ 가산세액: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 및 제76호의17서식의 구분, 기준금액,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.
- ⑱ 감면분 추가납부세액: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의 구분, 근거법 조항, 금액 및 금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.
- ⑳ ~ ㉒ 기납부세액: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.

법인세 신고·결정·경정내역(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란)

- ㉓, ㉔ 가산세액: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서식 및 제76호의17서식의 구분, 기준금액,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.
- ㉕, ㉖ 기납부세액: 기납부세액 중 수시부과세액을 기재합니다.

법인세 신고·결정·경정내역(고지세액란)

- ㉗ 본세: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.
- ㉘ 무신고 등 가산세: 해당 가산세 중 ㉙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고, 가산세 구분, 기준금액,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.

※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등 양도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항목만을 기재합니다.